

인권법에 관한 당정협의 보도자료

- 당정은 1999. 3. 22. 인권법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, 인권위원회를 독립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,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권법(안)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였음
- 인권법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여, 당정은 98. 9 이후 6차례에 걸친 당정협의와 사전 예비접촉을 거쳐 법무부의 최종 수정안에 당안을 전폭 수용하게 된 것임.
- 당정이 합의한 인권법안은 UN권고안에 충실하게 작성된 것이며, 당정은 최선의 인권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, 우리의 인권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였음
- 당정은 99. 4. 초에 인권법(안)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
- 인권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
 - 인권위는 민간기구로 설치
 - 인권위원은 국회의장,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인과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
 - 인권위는 수사기관등에서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 보유
 - 인권위의 인사, 예산, 운영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 배제
-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의 설치는 국내적으로는 검찰, 경찰, 국가정보원 등 수사·정보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국민은 「국민인권위원회」에 조사와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,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, 국제적으로는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함